

● 제319회 ●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856)

2023. 06. 19 .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 이소라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856

I . 조례안 개요

1. 제안자 및 제안경의

- 가. 제안자 : 이소라 의원외 14명
- 나. 제안일자 : 2023. 5 . 30.
- 다. 회부일 : 2023. 6 . 05.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 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정보접근을 위하여 의사소통 및 보완대체의사소통체계에 대한 지원은 필수적임.
- 그러나 일례로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시각장애인 중 점자 해독이 가능한 비율은 전체의 약 6.9%로 현저히 낮은 현실임.
- 이에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기본계획에 장애인의 의사소통 증진을 위한 수화, 점자 및 장애인 보조기기 등에 관한 교육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 및 사회참여를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기본계획에 수화, 점자 및 장애인 보조기기 등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입법예고 : 2023.6.8.~6.12.(의견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II .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박지향)

1 개정안의 취지

- 개정안은 의사 표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의 의사소통 및 정보 접근을 위해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기본계획에 수화, 점자 및 장애인 보조기기 등의 교육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 및 사회참여를 도모하고자 제안되었음(안 제3조).

현 행	개 정 안
제5조(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기본 계획 수립) ① 시장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기본 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기본 계획 수립) ----- ----- -----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신설>	3. <u>장애인의 의사소통 증진을 위한 수화, 점자 및 장애인 보조기기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u>
3.·4. (생략)	4.·5.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2 개정안 주요 사항

- 개정안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증진을 위한 수화, 점자 및 장애인 보조기기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UN 장애인권리협약 제21조(의사 및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성)에는 모든 유형의 장애인이 선택한 의사소통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정보를 구하고, 얻고 알리는 자유를 포함하여 의사 및 표현의 자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특히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공식적인 교류에 있어 보완대체의사소통(augmentative alternative communication: AAC), 그리고 장애인의 선택에 따른 의사소통 관련 모든 접근 가능한 수단, 방식 및 형식의 사용을 수용하고 지원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¹⁾

1) 제23조(정보접근·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이용을 위한 도구의 개발·보급 및 필요한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제품을 설계·제작·가공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따라 한국수어, 구화,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큰문자 등을 습득하고 이를 활용한 학습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의사소통양식 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2016. 2. 3., 2017.

에는 정보 접근과 의사소통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에 대한 부분이 명시되어 있음.

- 시각장애인은 장애 정도에 따라 점자, 점자·음성변환용 코드, 확대 문자 등을 통해 정보를 습득하고 있으며, 정보습득 방법에 따라 점자정보단말기, 화면 확대 프로그램 등 여러 보조기기 중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 사용하고 있음. 참고로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의 6.9%만이 점자 해독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1〉 시각장애인의 점자 해독 여부

구분	남자	여자	합계
가능하다	8.3%	4.9%	6.9%
불가능하다	88.9%	92.7%	90.4%
배우는 중이다	2.8%	2.5%	2.7%
전국 추정 수	133,196명	92,720명	225,916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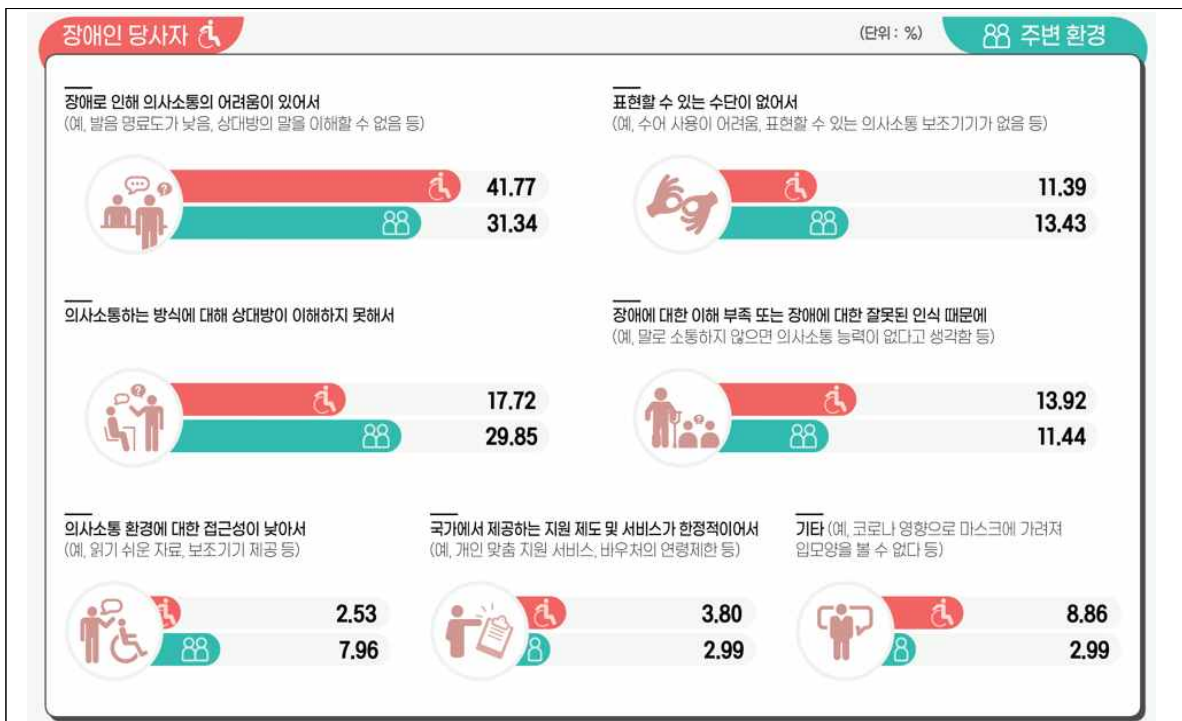
*주: 시력장애를 가진 시각장애인에 대한 점자해독 가능비율

*자료: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보건복지부, 2021.12.)

- 이와 관련하여 청각장애인 중에서 수어를 할 수 있지만 주된 의사소통 방법이 수어가 아닌 이유는 ‘수어가 능숙하지 않아서’가 34.4%로 가장 많았고, ‘상대방이 수어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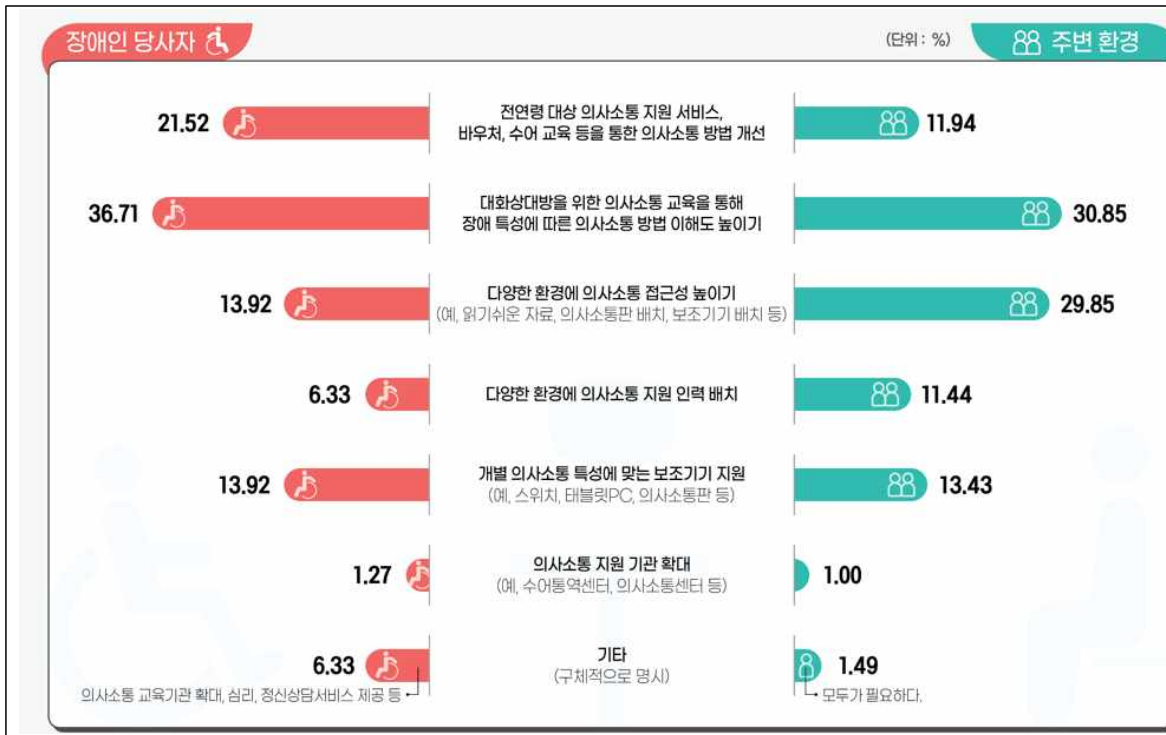
하지 못해서'가 27.9%, '수어를 할 수 있지만 다른 방법이 더 편해서(주위 시선 등 고려)'가 15.2% 등으로 나타남.

- 서울시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에서 실시한 「2021년 서울시 장애인 의사소통 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인 당사자가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주된 이유에 대해서 장애로 인해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41.77%로 제일 높았으며 의사소통하는 방식에 대해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해서 17.72%, 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 또는 장애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13.92% 순으로 나타남.



- 또한 의사소통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 당사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대화 상대방을 위한 의사소통 교육을 통해 장애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 방법 이

해도 높이기가 36.71%로 가장 높았으며 바우처, 수어 교육 등을 통한 의사소통 방법 개선이 21.52%, 개별 의사소통 특성에 맞는 보조기기 지원 순으로 나타났음.



- 서울시에서는 복지정책실 각 부서별 장애인에 대한 교육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교육내용은 아래와 같음.

부서명	교육 사업																			
장애인 복지정책과	○ 사업명 : 보조기기센터 운영																			
	● 이용대상 : 서울시 거주 등록 장애인 * '21년 이용인원 : 19,959명																			
	● 사업내용 : 보조기기 보급·대여·상담·평가·사후관리, 전시·체험, 홍보 등																			
	● 사업예산('22) : 1,569백만원(시비 100%)																			
	● 보조기기센터 현황 : 권역별 4개소 * 인력 : 총24명(센터별 6명)																			
	<table border="1"> <thead> <tr> <th>센터명</th> <th>위탁법인</th> <th>관할 자치구</th> <th>위탁기간(개소일)</th> </tr> </thead> <tbody> <tr> <td>동·남</td> <td>(재)푸르메</td> <td>강동구, 광진구, 성동구,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td> <td>'21.5.1~'24.3.31('08.12월)</td> </tr> <tr> <td>동·북</td> <td>(사)한국뇌성마비복지회</td> <td>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중랑구, 성북구, 동대문구</td> <td>'20.11.~'22.12.31('14.8월)</td> </tr> <tr> <td>서·남</td> <td>(사)한국뇌성마비복지회</td> <td>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td> <td>'20.11.~'22.12.31('08.12월)</td> </tr> <tr> <td>서·북</td> <td>(재)푸르메</td> <td>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종로구, 용산구, 중구</td> <td>'21.5.1~'24.3.31('18.5월)</td> </tr> </tbody> </table>	센터명	위탁법인	관할 자치구	위탁기간(개소일)	동·남	(재)푸르메	강동구, 광진구, 성동구,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21.5.1~'24.3.31('08.12월)	동·북	(사)한국뇌성마비복지회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중랑구, 성북구, 동대문구	'20.11.~'22.12.31('14.8월)	서·남	(사)한국뇌성마비복지회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20.11.~'22.12.31('08.12월)	서·북	(재)푸르메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종로구, 용산구, 중구
센터명	위탁법인	관할 자치구	위탁기간(개소일)																	
동·남	(재)푸르메	강동구, 광진구, 성동구,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21.5.1~'24.3.31('08.12월)																	
동·북	(사)한국뇌성마비복지회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중랑구, 성북구, 동대문구	'20.11.~'22.12.31('14.8월)																	
서·남	(사)한국뇌성마비복지회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20.11.~'22.12.31('08.12월)																	
서·북	(재)푸르메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종로구, 용산구, 중구	'21.5.1~'24.3.31('18.5월)																	

부서명	교육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서울시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운영 - 운영인력 : 5명(센터장 1명, 팀장 4명) ○수탁법인:(사)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 위탁기간 : 3년('20. 9. 1. ~ '23. 8. 31.) ○ '23년예산 : 405,925천원(시비 100%) ○ 수탁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한 수단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사항 -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 사업의 컨설팅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장애인 자립지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시청각 장애인학습지원센터 ○ 사업수행기관 : 10개소 (시각 6개소, 청각 3개소, 시청각 1개소) ○ 시설현황 <table border="1" data-bbox="408 909 1334 1447"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e0f2f7;"> <th colspan="2">센 터 명</th> <th>운 영 법 인</th> <th>개관</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6">시각 (6개)</td> <td>실로암시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td> <td>사북)실로암 시각장애인복지회</td> <td>'00.1.</td> </tr> <tr> <td>하상시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td> <td>사북)하상복지재단</td> <td>'06.1.</td> </tr> <tr> <td>성북시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td> <td>사북)대한맹인 복지회</td> <td>'10.1.</td> </tr> <tr> <td>노원시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td> <td>사단)한국시각 장애인연합회</td> <td>'13.1.</td> </tr> <tr> <td>설리번 학습지원센터</td> <td>사북)실로암 시각장애인복지회</td> <td>'13.6.</td> </tr> <tr> <td>한국시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td> <td>사북)한국시각 장애인복지회</td> <td>'14.1.</td> </tr> <tr> <td rowspan="3">청각 (3개)</td> <td>서울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td> <td>사단)한국농아인 협회</td> <td>'15.7.</td> </tr> <tr> <td>소리샘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td> <td>사북)서울삼성원</td> <td>'18.3.</td> </tr> <tr> <td>청음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td> <td>사북)한국청각장애인복지회</td> <td>'18.3.</td> </tr> <tr> <td>시청각 (1개)</td> <td>실로암시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td> <td>사북)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td> <td>'20.11.</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수화통역센터 운영 ○ 센터 운영 : 26개소(본부 1개소, 자치구센터 25개소) - 수어 통역 : 민원(법률·관공서 이용 등), 일상생활, 의료 등 분야별 통역 - 수어 상담 : 가족, 직장, 심리 등에 대한 상담 (출장, 내방, 영상통화) - 수어 교육 : 수어교육·보급사업 및 청각·언어 장애인의교육 - 기타 사업 : 임직원 연수, 조직강화사업, 서비스보완사업, 홍보사업 등 	센 터 명		운 영 법 인	개관	시각 (6개)	실로암시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	사북)실로암 시각장애인복지회	'00.1.	하상시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	사북)하상복지재단	'06.1.	성북시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	사북)대한맹인 복지회	'10.1.	노원시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	사단)한국시각 장애인연합회	'13.1.	설리번 학습지원센터	사북)실로암 시각장애인복지회	'13.6.	한국시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	사북)한국시각 장애인복지회	'14.1.	청각 (3개)	서울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	사단)한국농아인 협회	'15.7.	소리샘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	사북)서울삼성원	'18.3.	청음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	사북)한국청각장애인복지회	'18.3.	시청각 (1개)	실로암시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	사북)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20.11.
센 터 명		운 영 법 인	개관																																			
시각 (6개)	실로암시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	사북)실로암 시각장애인복지회	'00.1.																																			
	하상시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	사북)하상복지재단	'06.1.																																			
	성북시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	사북)대한맹인 복지회	'10.1.																																			
	노원시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	사단)한국시각 장애인연합회	'13.1.																																			
	설리번 학습지원센터	사북)실로암 시각장애인복지회	'13.6.																																			
	한국시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	사북)한국시각 장애인복지회	'14.1.																																			
청각 (3개)	서울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	사단)한국농아인 협회	'15.7.																																			
	소리샘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	사북)서울삼성원	'18.3.																																			
	청음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	사북)한국청각장애인복지회	'18.3.																																			
시청각 (1개)	실로암시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	사북)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20.11.																																			
문화체육관광부	점자교육에 관한 사항, 한국수어 교육에 관한 사항 등																																					

3 종합의견

- 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은 독립적인 생활과 함께 자기 계발 및 자아실현의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의사소통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증진하여, 장애인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그러나, 다양한 시기와 상황에 놓인 장애인을 위한 지원에 대응할 수 있는 포괄적인 체계가 요구되는 현실에 장애인 의사소통 지원은 다양한 장애 유형별 의사소통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장애인의 의사소통 문제는 장애 유형별로 신체적 장애나 지적, 인지적 장애, 그리고 사회·정서적 특성을 동일하게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개인별 차이가 있음. 이에, 장애인의 선택에 따른 다양한 의사소통 수단 제공 및 교육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본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문 의 처

이윤진 입법조사관 (02-2180-8140)